

육계자조활동자금 대의원 선거규정

[제정 2005. 8. 23]

제1절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축산물의 소비촉진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육계자조활동자금 설치를 위한 대의원선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한 선거를 치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육계자조활동자금 설치를 위한 대의원선거에 한하며,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축산단체”라 함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사단법인 대한양계협회(이하 “양계협회”), 사단법인 한국계육협회(이하 “계육협회”)를 말하며, 지역축산업협동조합 및 협회의 지회 및 지부 등 관련 산하조직을 포함한다.
- “대의원”이라 함은 육계자조활동자금 설치를 위하여 선출되는 대의원을 말한다.
- “공동준비위원회”라 함은 육계자조활동자금의 설치를 위하여 중앙단위에서 축산단체가 위촉하여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4. “선거관리위원회”라 함은 대의원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중앙 및 시도 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한다.

제4조(선거인)

선거인은 농림부의 가축사육두수 조사결과에 의한 육용계부문 축산업자로 한다.

제5조(선거방법)

① 선거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연기명으로 하며 선거권자는 1인 1표로 하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행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필요한 경우 우편투표를 할 수 있다.

② 투표는 직접투표로 하되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선거관리위원장이 정한 장소에서 한다.

제6조(선출구)

① 선출구는 시·군단위(광역시는 시단위)로 설치하되 공동준비위원회에서 확정한다. 다만, 농가수와 사육두수가 현저히 적은 시·군단위는 인근 선거구와 병합하여 정할 수

있다.

- ②선출구별 대의원수는 축산물의소비촉진등
에관한법률에 의거 육용계 사육업자의 수와
육용계 사육마리수를 각각 50%의 비율로
산정하며 공동준비위원회에서 확정한다.

제7조(선거일)

- ①최초선거일은 공동준비위원회에서 선거일
로부터 40일 전까지 결정한다.
②대의원의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는 대의원의
임기만료일전 40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다.
③재선거 및 보궐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한다.

제2절 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관리

제8조(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및 선출)

- ①선거사무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중앙 및 시
도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공동준비위원회”에
서 추천하며, 시도 선거관리위원장은 선출
구별로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이하 “지역축
협”) 조합장(또는 조합장이 위촉하는 임직
원)과 양계협회와 계육협회의 지회 및 지부
장(또는 지회 및 지부장이 위촉하는 직원)이
협의하여 정하고, 다만 양계협회 및 계육협
회 지회 및 지부가 없는 선출구에는 지역축
협 조합장으로 하고 그 결과를 “중앙선거관
리위원장”에 보고한다.

③위원장의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선거가 모
두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 ④위원장은 선거일 공고일에 선거위원(종사
자)명단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선거관리위원회 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선거인명부의 작성, 후보자등록, 선거운동
관리, 투표 및 개표관리, 당선인 결정 등 선
거관리에 관한 사항
2. 투표참여 안내 등 공명선거 홍보에 관한 사항
3. 선거규정 위반 감시, 위반자에 대한 경고,
후보자 등록무효결정, 선거에 대한 이의신
청 · 기타의 심사 · 처분에 관한 사항
4.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선거준비)

선거관리위원회는 대의원선거를 위하여 투표
소, 개표소 등을 설치하고 선거실시를 위한 제반
준비물을 선거일 전일까지 투표소에 비치한다.

제11조(선거관리 업무분장)

- ①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별 축산단체의 직
원 중에서 선거종사 요원을 지명한다.
②선거종사요원은 선거준비 · 선거진행 · 개표
준비 · 개표진행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③선거종사요원은 선거록(투표 및 개표 내용
을 포함한다)을 작성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이에 기명날인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인 등)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직인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소속된 단체와 당해 단체장 선거시 사용하는 선거 관리위원회 직인을 그대로 사용한다.

제3절 선거인

제13조(선거인명부)

-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거일로부터 35일 전까지 선거구별 선거인명부를 확정하여 선거구별 선거관리위원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거일로부터 30일전까지 선거인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 ③ 선거인명부에는 선거인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사육두수, 연락처 등을 기재한다.
- ④ 선거인은 비치된 선거인명부를 선거일 30일 전부터 전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 ⑤ 선거인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을 경우에는 선거일로부터 3일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⑥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선거인명부를 수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게 보고한다. 단, 사육두수의 수정은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⑦ 선거인명부에 누락되었던 사육농가가 선거권을 요청할 때에는 증빙서류(시장, 군수가 발행하는 가축사육확인서 등)를 제출하게 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판단하여 이상이 없

을 경우 선거권을 부여할 수 있다.

제4절 선거공지

제14조(선거공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거일 30일전까지 다음 사항을 별지 1호 서식에 의거 선출구별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선거구별 대의원의 수
2. 선거인 및 피선거권자
3. 선거인명부 열람장소 및 기간
4. 투표일시 및 장소(유효투표수 미달시 선거 일 연장에 관한 사항)
5. 후보자등록 접수장소 및 기간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15조(선거공보)

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후보자에 관한 다음 사항을 게재한 별지 8호 서식에 의한 선거공보를 1회 발행하여 선거인에게 배포한다.

1. 기호
2. 사진
3. 성명
4. 생년월일
5. 주소
6. 학력(경력포함)

② 선거공보에는 제1항의 사항 이외에 선거일 시 및 장소, 선거구별 선출 대의원수, 투표 절차, 선거제도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게재 할 수 있다.

- ③후보자는 제1항 제2호 내지 제6호의 사항을 등록신청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선거공보에 게재할 후보자의 순서는 기호순에 의한다.
- ⑤후보자가 사진 및 원고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선거공보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⑥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공보를 선거일로부터 10일전 선거인에게 발송 또는 선출구 축산단체 사무소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절 후보자 등록

제16조(후보자의 자격)

대의원후보자는 법률 제9조 제6항에 의거 육용계 사육농가 및 사육두수 조사 결과표에 등재되어 있는 자로서 선거공고일 현재 선거구 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을 둔 육용계 사육업자로 한다.

제17조(후보자 등록)

- ①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구별 투표소에 후보자등록창구를 설치한다.
- ②후보자 등록기간은 선거일 공고일 익일부터 10일이내로 하며, 후보자등록기간내에 후보자의 수가 선출하여야 할 대의원수보다 적을 경우 등록기간을 3일이내에서 연장하고 이를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후보자 등록 신청)

- ①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후보자등록 마감시각까지 소정의 후보자등록신청서를 갖추어 본인이 직접 등록창구에 별지 2호 서식에 의거 신청하여야 한다.
- ②선거관리위원장은 별지 3호 서식의 등록부에 기재하고, 그 자격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별지 4호 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고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제출된 서류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 ③후보자등록신청서의 접수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 ④선거관리위원장은 등록마감일 다음날에 소정의 후보자 등록사항을 별지 5호 서식에 의거 선거구별 투표소 게시판에 게시한다.

제19조(후보자의 기호결정)

- ①선거관리위원장은 후보자의 등록마감일 익일에 후보자의 참여하에 추첨에 의하여 후보자의 기호를 정하며 기호는 1, 2, 3으로 한다. 다만, 후보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이 대리하여 추첨할 수 있다(별첨 7호 서식).
- ②기호가 정하여진 후에는 후보자의 사망, 등록취소, 등록무효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투표용지에서 그 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을 말소하지 아니한다.

제6절 선거운동

제20조(공명선거 서약서)

대의원 입후보자 전원은 공명선거를 다짐하는 별지 제6호의 서약서에 기명 날인하고 선거구별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절 투표

제21조(투표소의 설치)

- ① 투표소는 지역축협과 협회 지회·지부 사무실 중 투표관리가 편리하고 선거관리가 용이한 곳에 설치한다.
- ② 투표소에는 투표함, 기표소, 선거인명부 대조, 투표용지 교부, 기타 투표에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 ③ 기표소는 다른 사람이 엿볼 수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어떤 표시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축산단체에서는 선거당일 투표율제고를 위하여 교통편의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22조(투표소의 출입제한)

투표소에 선거관리위원(장), 선거종사요원, 참관인 그리고 투표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출입할 수 없다.

제23조(참관인)

- ① 참관인은 선거구별로 축산단체에서 각 1명 ~3명씩 추천하며 선거구별 사정에 의거 선

거관리위원장이 겸임할 수 있다.

- ② 후보자는 투표, 개표를 참관할 수 없다.
- ③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용지의 교부상황 또는 투·개표상황을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투·개표 참관인석을 설치한다.
- ④ 참관인은 투·개표 방해, 부정투표 기타 법령·규정 등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선거관리위원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장은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시정한다.
- ⑤ 투표참관인은 선거사무를 방해하거나 투표의 유혹 기타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 ⑥ 참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중도에 그 직을 사임할 수 없다.

제24조(투표함의 준비)

투표함의 수는 1개의 선거구에 1개로 하되 병합된 선거구의 경우 시·군별로 설치할 수 있다.

제25조(투표용지)

- ①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 성명 및 기표란을 인쇄하여야 한다.
- ② 투표용지에 인쇄할 후보자의 계재순서는 기호에 따라 상에서 하로 1, 2, 3 등으로 하며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과 한자를 병기할 수 있다.
- ③ 투표용지의 일련 번호란에 선거인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일련번호를 기입하며, 소정란

에 선거관리위원회 직인을 날인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 직인을 투표용지에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가 조제·보관 과정에서 도난, 유실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투표용지의 조제는 별지 제9호 서식 규격에 의거 제작하여 사용한다.

제26조(투표절차)

- ① 선거종사요원은 선거인명부와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선거인 본인임을 확인하고, 선거인명부에 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 ② 투표종사요원은 투표용지 소정란에 사인을 날인하고 일련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번호지를 떼어 번호지 함에 넣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 ③ 선거인은 투표소에 비치된 소정의 기표용구로 투표용지에 기재된 후보자 중 선거구별 선출대의원의 수 이내에서 각각 “◎” 표를 기표한 후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투표함에 넣는다.

제8절 개표

제27조(개표절차)

- ① 선거종사요원은 투표가 끝나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참여하에 투표함을 봉인하고 잔여 투표용지, 번호지, 기타 투표관계 서류와 함께

제28조(개표관리 주관)

- ② 선거종사요원은 투표가 끝난 즉시 선거인명부에 의거 유효투표수의 충족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③ 선거인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육용계 사육농가의 과반수 또는 선거구안에서 사육하는 육용계 마리수의 3분의 2 이상을 사육하는 농가가 투표에 참여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해당 선거구의 유효투표수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유효투표수가 미달되었을 경우에는 개합하지 아니하고 봉인된 상태로 투표함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29조(개표소의 출입제한)

-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종사요원, 참관인, 선거관리위원회 미리 관람을 허용한 관람인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개표소에 출입할 수 없다.

제30조(개표결과 집계)

-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에서 정하는 유효투표수를 충족한 투표함에 한하여 봉인을 검사한 후 이를 개합한다.

②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종사요원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거 개표결과를 집계하고 날인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게 보고한다.

제31조(투표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

투표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선거종사 요원은 선거관리위원장과 협의하여 소정 기준에 의하여 판단결정하고,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즉시 공동준비위원회로 보고한다.

제32조(투표지의 구분)

개표가 끝난 때에는 투표지를 유효·무효로 구분하고, 투표지는 후보자별로 구분하여 각각 봉투에 넣어 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종사요원이 날인한다.

제33조(무효투표)

-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선거구별 선출할 후보자수 이상에 “” 표를 한 경우
 2. 소정의 투표용지나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3.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4.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 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6. “” 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하거나 선출후보자 수란 외에 “” 표를 추가한 것
-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7. “” 표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 표 안이 메워진 것으로서 소정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한 것이 명확한 것
8. 동일 후보자란에만 2 이상 기표되거나 중첩 기표된 것(득표계산시 1표로 처리함)
9. 기표한 것이 옮겨 묻은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10. 인주(印朱)가 묻어서 오손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11. 선거구별 선출할 후보자수 이하로 “” 표를 한 경우

제9절 당선인 결정·통지 및 공고

제34조(당선인 결정)

①유효투표수를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선거구별 배분된 대의원수까지 다수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다만, 다수득표자가 경합될 때에는 연장자순에 의하여 당선자를 결정한다.

제35조(당선의 공고)

선거관리위원장은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즉시 공동준비위원회와 당선인에게 당선사실을 통지하고 축산단체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거 게시판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절 재선거 및 보궐선거

제36조(선거일연장)

①유효투표수가 미달된 선거구에 한하여 선거일 익일에 한하여 선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은 내용이 미리 공고되어야 한다.

②선거인은 전일 투표에 참가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투표함은 유효투표수 미달로 개함하지 아니하였던 투표함을 개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용한다.

제37조(재선거 및 보궐선거)

①당선인이 임기 개시 이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투표구에 한하여 재선거를 실시한다. 다만, 대의원정수의 3/4이상이 선출되었을 때에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1. 선거과정에 부정이 개입되었거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한 때
2. 자격이 없는 자 임이 발견되거나 발생된 때

②대의원이 임기 도중 사퇴 · 사망하거나 대의원자격 상실로 궐위 되었을 때는 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장은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결원대의원의 수가 대의원 정수의 100분의 5미만이거나 잔여임기가 1년 이내인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절 선거비용의 처리

제38조(선거비용의 처리)

①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는 대의원 선거 및 대의원회 개최에 소요될 총 비용을 확정하고 이를 선거 당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대의원선거에 따르는 비용은 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집행한다.

제12절 기록보존

제39조(투표지보전)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지 및 관련 서류를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의 대의원 선거비용)

①공동준비위원회는 대의원 선거 및 대의원회 개최에 소요될 총 비용을 확정하고 축산단체로부터 분담금을 거출하여야 한다.

②축산단체는 선거공고일 이전까지 공동준비 위원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대의원선거에 따르는 비용은 공동준비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집행한다. C